#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0

발의연월일: 2025. 2. 5.

발 의 자:서명옥·김형동·김종양

조은희 · 정점식 · 김성원

신성범 · 강명구 · 진종오

주호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 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등은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 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 4. 제68조 및 제75조).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에 제16호의2, 제18호의2 및 제1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학원·교습소"를 "학원·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서비스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 1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18의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 19의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19의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19의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2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유아숲체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교육센터
- 2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목재문 화체험장
- 3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을 행하는 사업장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관 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 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3. 제1항제18호의2의 국제학교
- 4. 제1항제18호의3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 5. 제1항제19호의2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6. 제1항제19호의3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 7. 제1항제19호의4의 대안교육기관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19호"를 "제18호의2·제18호의3·제19호·제19호의2·제19호의3·제19호의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0호"를 "제16호의2·제2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림청장: 제29조의3제1항제28호·제29호·제30호에 따른 아동관 련기관

제6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5조제4항 중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제29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	제한 등) ①
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	
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이 유예 •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	
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	
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	
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	
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	
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	
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	
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	
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6. (생 략) <u><신 설></u>

17. · 18. (생략) <u><신설></u>

<신 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1. ~ 16. (현행과 같음)
<u>16</u> 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
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7.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
립된 국제학교
18의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u>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
기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
는 외국교육기관
19
취이 그스 제 가수
<u>학원·교습소 및 같은</u>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

<신 설>

<신 설>

<u><신 설></u>

20. ~ 23. (생 략)24.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25. ~ 27. (생 략) <u><신 설></u> 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 교습소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 다)

19의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법 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19의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 관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19의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 육기관

20. ~ 23. (현행과 같음)

24. -----

----- <u>서비스제공기관 및</u>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 육아나눔터

25. ~ 27. (현행과 같음)

2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유아숲체 험원, 같은 법 제13조의 산림

<신 설>

<신 설>

② ~ ⑥ (생 략) <신 설>

#### 교육센터

- 2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른 목재문화체험장
- 30.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1조에 따른 산림복지

   전문업을 행하는 사업장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 동관련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 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 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 회를 한 것으로 본다.
- 1. 제1항제8호의 유치원
- 2. 제1항제18호의 학교 및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는 기관
- 3. 제1항제18호의2의 국제학교
- 4. 제1항제18호의3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 5. 제1항제19호의2의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① 제4항부터 <u>제6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보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 ·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제29조의 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 제7호·제8호·제18호·<u>제19</u> 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6. 제1항제19호의3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u>7. 제1항제19호의4의 대안교육</u>
<u>기관</u>
<u> ⑧</u> <u>제7항</u>
<u>.</u>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
• 확인) ①
1
<u>제18</u>
<u>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ㆍ</u>
제19호의2ㆍ제19호의3ㆍ제19

2. · 3. (생략)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 제1항제2호·제3호·제4호· 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제24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6. (생략) <신설>

② · ③ (생 략)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호	의	4	_	_	_

- 2. · 3. (현행과 같음)
- 4. -----

\_\_\_\_\_

-----<u>ঝ16ই</u>

<u> 의2·제20호</u>-----

\_\_\_

- 5. · 6. (현행과 같음)
- 7. 산림청장: 제29조의3제1항제28호 · 제29호 · 제30호에 따른아동관련기관
-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 조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4 -----

\_\_\_\_\_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 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 과·징수한다.

<u>제29조의4제1항 각 호</u>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